##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41

2019. 8. 29. 기획경제위원회

# I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8월 7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다. 상정결과:

【서울특별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9.8.29.)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 Ⅱ.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서정협)

## 1. 제안이유

○ 서울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서울시를 방문하는 외빈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격려하고 국제우호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수여대상자

1) 명예시민 : 총 19명 (남자 14명, 여자 5명) ※세부명단 별첨

가) 국적별 : 14개국

| 네팔  | 1 | 몰도바  | 1 | 인도네시아 | 1 | 파키스탄 | 2 |
|-----|---|------|---|-------|---|------|---|
| 대만  | 1 | 미국   | 1 | 체코    | 1 | 프랑스  | 3 |
| 독일  | 3 | 베트남  | 1 | 캐나다   | 1 |      |   |
| 멕시코 | 1 | 아일랜드 | 1 | 콜롬비아  | 1 |      |   |

## 나. 추진경과

- 2019. 6.10 ~ 7.19 명예시민 추천공고 및 접수 (총 26개국 37명)
- 2019. 7.22 ~ 7.30 공적·거주기간 등 자료 검토
- 2019. 7.312019 명예시민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추천자 37명 중 19명 선정)

## 다. 수여예정일

○ 2018. 10 ~ 11월 중 「2019 명예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 및 수여

라.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가. 동의안의 개요

 동의안은 서울시정에 대한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시민과 서울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외국인 가운데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이하 "명예시민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19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에 앞서 서울시의회(이하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나. 명예시민 선정절차 및 운영현황

- 서울시는 국제교류협력과 우호증진을 위해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하고 귀감이 되는 외국인이나 방문 외빈에게 '명예시민'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의 선정은 후보자 추천공고와 추천, '명예 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의 심사, 시의회의 동의를 통해 진행되며, 이 과정을 통해 부적절한 대상자 선정을 막고 명예 시민증의 권위를 유지하고 있음.
- 명예시민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1958년 이후¹) 현재까지 모두 97개국 828명을 대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였으며, 최근에는 2016년

<sup>1) 1958</sup>년 공로시민증 제도로 시행되었으며, 1972년 명예시민증 조례가 제정됨.

30명, 2017년 21명, 2018년 32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음.

○ 명예시민에게는 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하거나, 각종 위원회나 행사 초청 등을 통한 시정참여 기회 제공,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립박물관·도시공원의 입장료 면제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음.

#### 다. 명예시민 선정의 적정성 판단

- 심사위원회는 명예시민조례에 따라 추천<sup>2)</sup>받은 명예시민 후보 37명을 대상으로 시정 공로를 비롯한 공적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19명을 수여대상으로 선정했음.
- 수여대상에서 제외된 18명은 거주기간 요건 부족, 심사위원 전체 회의와 심사위원별 개별평가 취합을 통해 서울시정과 관련성이 미흡 하고 구체적인 공적사항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 후보자임.
-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방송 등으로 유명한 외국인을 서울시 홍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선정하는 경우도 있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상자를 선정해야 할 것임.
- 또한 수여대상자의 대다수가 남성3)이므로 최근 양성평등 기조에 부합 하도록 성비를 조정할 필요도 있으며, 중앙정부의 "명예국민제도4)"와

<sup>2) 「</sup>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3조(후보자 추천)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시민은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sup>3) 2019</sup>년 수여대상자 중 남 14명. 여 5명.

비교할 때 명예시민의 무분별한 선정으로 그 가치와 희소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명예시민제도의 권위와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최근 5년 시정공로 명예시민 성별 통계 〉

| 수상년도 | 시정공로 총합(명) | 남(명) | 여(명) |
|------|------------|------|------|
| 2018 | 22         | 18   | 4    |
| 2017 | 15         | 10   | 5    |
| 2016 | 21         | 14   | 7    |
| 2015 | 16         | 11   | 5    |
| 2014 | 12         | 11   | 1    |

 아울러 명예시민증 수여 이후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명예시 민제도의 권위와 수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서울시 홍보대사 위촉 등을 통해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지속적인 사후관리 가 필요함.

<sup>4)</sup> 명예국민제도는 2002년 설치되어 2019년 8월 현재까지 총 4명(거스 허딩크(2002년, 축구감독), 마리안느 스퇴거(2016년, 40여년간 소록도 봉사한 수녀), 마가렛 피사렛(2016년, 40여년간 소록도 봉사한 수녀), 패트릭 제임스 맥그린치(2018년, 성이시돌 목장, 양돈장 등을 설립해 제주도 근대화에 기여한 신부)가 선정되었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V. 토론요지: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의 안 번 호 941

제출년월일: 2019년 8월 7일 제 출 자: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빈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격려하고 국제우호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제4조)에 의거 명예시민 수여대상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추진경과

- 2019. 6.10 ~ 7.19 명예시민 추천공고 및 접수 (총26개국 37명)
- 2019. 7.22 ~ 7.30 공적·거주기간 등 자료 검토
- 2019. 7.31 2019 명예시민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추천자 37명 중 19명 선정)

나. 선정결과 : 총 19명(남 14명, 여 5명) ※세부명단 별첨

○ 국적별 : 14개국(※ 국가별 가나다순)

| 네팔  | 1 | 몰도바  | 1 | 인도네시아 | 1 | 파키스탄 2 |
|-----|---|------|---|-------|---|--------|
| 대만  | 1 | 미국   | 1 | 체코    | 1 | 프랑스 3  |
| 독일  | 3 | 베트남  | 1 | 캐나다   | 1 |        |
| 멕시코 | 1 | 아일랜드 | 1 | 콜롬비아  | 1 |        |

#### 다. 향후일정(안)

○ 2019.10~11월 중 「2019 명예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 및 수여

#### 라. 관련근거

- 1) 수여대상: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2조
  -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
  -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외국인
  -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주요건 등을 완화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음
- 2) 수여대상자 결정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 제1항
  -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은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된 자 중에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 3) 서울시의회 동의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 제2항
  - 시장은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 다만,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음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국제교류담당관 미주구주팀 이현음 (☎ 2133-5285)